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안 제29조의2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하며,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 신청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반출을 승인 할 수 있음.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3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가명정보의 활용의 안전성 강화, 가명정보
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방
지)

- 규제 강화 1건(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검직금지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職)을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7조의9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를 “보호위원회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⑦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의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7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7조의9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7조의9제5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를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을 “6월 30일까지 다음”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를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제4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를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4조제3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제2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실는 방법

제4장의2(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서를 제출받은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②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결합전문기관에 대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

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를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을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각각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34조의7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34조의8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업무

제3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게 하여야”를 “첨부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을 “보호위원회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를 “요구,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또는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

른 동의 철회의 요구”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제48조의14로 하고, 제6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안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

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 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1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8조의14(중전의 제48조의2) 중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을 “보호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5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

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보호위원회”로,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를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로 한다.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6, 법 제34조의2 및 법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제62조의3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보호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2.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자의 범위 및 기준 등: 2020년 8월 5일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2020년
8월 5일

2.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2020
년 8월 5일

제63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중전의 별표 1) 제1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보호위원회
가”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 2) 제2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2항 관련)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 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비고

1. “이용자 수”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말한다.
2. “매출액”이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9조의15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 1) 기준금액은 제48조의1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일반 위반행위	1천분의 15

- 2) 제48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600	1,200	2,400
타.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를 설치·운영한 경우	제2항제7호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4호	200	400	8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	200	400	800
머. 법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6호의2	200	400	800
버. 법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7호	200	400	800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8호	500		
저.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3	600	1,200	2,4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9호	200	400	800
허.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고.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노. 법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2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3	600	1,200	2,400
로.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4	600	1,200	2,400
모. 법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5	600	1,200	2,400
보.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6	600	1,200	2,400
소.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7	600	1,200	2,400
오. 법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400	800	1,600
조. 법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0		
초.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400	800	1,600
코. 법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8	600	1,200	2,400
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0호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11호	200	400	800
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① <u>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u> 1. <u>위원 또는 위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u> 2. <u>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u> 3.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u> ② <u>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u>	<u><삭 제></u>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검직금지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職)을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
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 4. (생략)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5조(전문위원회) ① -----
-- 법 제7조의9제1항-----

-----.

② -----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
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정책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협회에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⑦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
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
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
련하여 시·도협의회의 협의
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출석수당 등) -----

----- 법 제7조의9제2항 -----

----- . -----

----- 그렇지 않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
 -- 법 제7조의9제4항-----

 ----- 통보해
 야 ----.

② ----- 법 제7조의9제
5항-----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
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
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
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
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
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
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
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

<삭 제>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 6월 30일
까지 다음 -----

--- 통보해야 ----.

② -----

----- 9
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
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
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
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해야 ----.

③ -----
----- 12월 31
일까지 심의·의결해야 ----.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

-----.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
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

	<u>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u> <u>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u> <u>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u> <u>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u>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u>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u>관리하여야</u>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 ----- ----- ----- ----- <u>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u> ----- ----- --- <u>관리해야</u>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생략)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u>행정안전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u>보호위원회가</u> ----- ---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u>
<신설>	4. <u>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u>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
 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
 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
 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
 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
 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
 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
 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
 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

 -----.

 -----.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
 항-----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
 보 조치) ① -----

 ----- 제30조 또
 는 제48조의2-----
 -----.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

 ----- 조사해야 -----

다.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보호위원회
가 -----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

-----.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정시설

2. (생략)

② (생략)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정시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시·도 -----

④ (생략)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
정보 이전의 통지)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
정보 이전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서를 제출받은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

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

<신 설>

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②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
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
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
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
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
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
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
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신 설>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
다.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
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
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
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
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
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
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
· 감독 등) 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결합
전문기관에 대하여 결합전문기
관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 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
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

<신 설>

시하는 사항

제29조의5(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 정보 및 가명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 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신 설>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
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
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
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
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
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생략)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 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
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
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② (생략)

<신설>

② 보호위원회는 -----

-----.

③ -----
----- 보호위원회가 -----.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보호위원회는 -----

-----.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

-----.

② 보호위원회는 -----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행정
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
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
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
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게재해야 ----.

③ 보호위원회는 -----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호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보호위원회가 -----
----.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

--.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 -----

----- 게시해야 -----.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호위원회에 제
출해야 -----.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

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생 략)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
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
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

문기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보호위원회가 -----

--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호위원회가 -----

② -----

--- 보호위원회가 -----
-----.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 보호위원회가 -----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가. ~ 다. (생략)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

-----.

표시해야 ----.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호위원회가 ----
-----.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

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
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생략)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
설파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
무

2. 별표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
----- 보호
위원회에 제출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4. -----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

③ -----
----- 보호위원회
는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

--- 확인해야 ----. -----

-- 않는 -----
----- 첨부하게 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

----- 고시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⑤ 보호위원회는 -----

-----.

----- 취소해야 -----
--.

1. ~ 6. (현행과 같음)

⑥ -----

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

-----.

----- 신고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⑦ 보호위원회는 -----

----- 해야 -----
-----.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
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
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
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一一一七二

-----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_____

----- 별표 1의3
과 -----.

② 보호위원회는 -----

----- 동지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

----- 보호위원회가 -----
----- 납부해야 -----.

----- 납부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호위원회를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
----- 보호위원회는 -----

----- 이송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
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 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

----- 않은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

---- 요구,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또는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의 요구-----

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

-----.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
합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
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
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
립·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
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
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
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
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
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
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안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

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
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
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
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
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
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
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
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
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
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
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
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
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

<신 설>

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

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

<신 설>

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

려는 경우 법 제39조의4제1항제 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 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

<신 설>

한다.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
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
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
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
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
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

<신 설>

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
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
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
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
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
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신 설>

<신 설>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9조의12 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1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 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신 설>

제48조의2(당연직위원)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
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
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
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사무기구) (생략)

<신 설>

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
원회-----

----- 보호

위원회 위원장-----

-----,

제50조(사무기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

	<u>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u> <u>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u> <u>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u> <u>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u> <u>있다.</u>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생략)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u>행정안전</u> <u>부 장관</u>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문서로 <u>통보하여야</u>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u>통보하여야</u> 한다.	② ----- ----- ----- <u>보호위</u> <u>원회</u> ----- ----- <u>통보해야</u> --- ---. ----- ----- ----- --- <u>통보해야</u> -----.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u>행</u> <u>정안전부장관</u> 은 법 제62조제2 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 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u>보</u> <u>호위원회</u> 는 ----- ----- ----- ----- ----- ----- -----.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생략)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보호위원회는 -----

-----.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 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
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
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
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
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7
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
회 -----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 -----

-----.

③ 보호위원회 -----
-----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

-----.

제62조(권한의 위탁)

② 보호위원회는 -----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 · 제공
· 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위탁한다.

1. ~ 5.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2조제3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
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③ 보호위원회는 -----

-----.

1. ~ 5.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

----- 고시
해야 ----.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
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6, 법 제34조의2 및 법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② -----

----- 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

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신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2.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2020년 8월 5일

② 보호위원회는 -----

-----.

2. · 2의2. (생략) <u><신설></u>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 2의2. (현행과 같음)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2020년 8월 5일 2. 제2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2020년 8월 5일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제4항-----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845